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필수 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필수의료를 지역완결적으로 강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1439호, 2026. 3. 10.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필수의료종합계획의 수립 등(안 제2조)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수의료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성과평가의 결과를 반영해야 하며, 시·도지사는 종합계획을 통보받을 경우 지체없이 시·군·구청장에게 이를 알리도록 함.

나. 시·도 필수의료시행계획의 수립 등(안 제3조)

보건복지부장관은 시·도 필수의료시행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여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하며, 시·도지사는 그 지침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다. 필수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해임·해촉 등(안 제4조 및 제5조)

- 1) 필수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행정안전부, 기획예산처 등 관계 부처 차관, 시·도지사 협의체 추천 부시장·부지사, 공급자 대표 및 수요자 대표로 구성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도록 함.
- 2) 필수의료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위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거나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할 경우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도록 함.

라. 필수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 1) 필수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
- 2) 필수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함.
- 3) 필수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1인을 간사로 두도록 함.

마. 필수의료지원센터의 운영 위탁 등(안 제9조)

- 1)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수의료지원센터의 운영을 국립중앙의료원 등 필수의료에 관한 업무를 지원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2) 필수의료지원센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위탁기간 동안의 운영 성과를 평가하여 그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바. 시·도 필수의료위원회의 구성 등(안 제10조)

- 1) 시·도 필수의료위원회의 공동위원장으로 책임의료기관 중에서 해

당 시·도의 진료권 전반을 대표할 수 있는 책임의료기관의 장을 위촉하도록 함.

- 2) 필수의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시·도 또는 시·군·구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도록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도록 함.

사. 시·도 필수의료위원회의 운영 등(안 제11조)

- 1) 시·도 필수의료위원회는 매년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도록 함.
- 2) 시·도지사는 시·도 필수의료위원회의 공정한 운영 및 이해 충돌 방지를 위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아. 초광역권협의회의 구성·운영(안 제12조)

시·도지사는 필수의료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접 시·도지사와 공동으로 초광역권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

자. 권한 등의 위임·위탁(안 제13조)

- 1)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수의료취약지에 대한 지원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
- 2)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수의료 실태조사, 성과평가, 진료협력체계 구축·운영 업무 및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관련 사무 등을 필수의료 지원센터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차. 과태료의 부과 기준(안 제14조)

필수의료 진료협력체계에 참여하는 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조사·검사

를 기피·거부·방해한 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과태료의 기준을 정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

제1조(목적) 이 영은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필수의료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필수의료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이하 “성과평가”라 한다)의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②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수립된 종합계획을 받은 특별시장, 통합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지체 없이 이를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알려야 한다.

제3조(시·도 필수의료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시·도(특별시, 통합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및 특별자치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 필수의료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여

이를 전년도 11월 3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지침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을 해당 연도 2월 말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행계획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을 요구받은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완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완된 시행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제출한 시행계획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인접한 시·도의 관할 구역의 일부를 포함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시·도지사는 해당 계획의 수립 예정일로부터 30일 전까지 인접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인접한 시·도의 관할 구역의 전부를 포함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인접 시·도지사와 공동으로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⑥ 시·도지사는 제5항에 따른 협의를 위하여 의견을 제출하려는 경우 그 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4조(필수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15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 소속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가. 행정안전부차관

나. 기획예산처차관

다.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2. 시·도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

② 제1항제2호의 위원은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도지사 협의체가 추천하며, 모든 시·도가 일정 주기로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필수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 참여할 수 있도록 2개 이상의 시·도 위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④ 법 제15조제4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심의위원회 위원(법 제15조제4항제1호에 따른 위원은 제외한다)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5조(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등)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법 제15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심의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위원회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법 제15조제5항에 따른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나 관계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5조제7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제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를 “분과위원회”로 본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심의위원회 간사) ①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보건복지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9조(필수의료지원센터의 운영 위탁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필수의료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의 운영을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중앙의료원

2. 그 밖에 필수의료에 관한 업무를 지원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수의료에 관한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② 제1항에 따른 위탁 기간은 3년으로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위탁기간 동안의 운영성과를 평가하여 그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원센터의 업무 일부를 다른 법인 또는 단체에 재위탁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2. 지원센터의 운영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센터 운영의 위탁, 재위탁 및 위탁 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10조(시·도 필수의료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17조제2항에서 “해당 시·도의 진료협력체계를 대표하는 사람”이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시·도에 지정된 책임의료기관 중에서 관할 진료권의 범위 등을 고려하여 해당 시·도의 진료권 전반을 대표할 수 있는 책임의료기관의 장(그 직무를 대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17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법 제17조제3항제3호에서 “시·도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소속 공무원”이란 필수의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시·도 또는 시·군·구 공무원을 말한다.

④ 시·도지사는 지역 여건 및 대표성 등을 고려하여 법 제17조제3항제3호에 따른 위원을 매년 임명한다.

⑤ 시·도지사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시·도 필수의료위원회(이하 “시·도위원회”라 한다) 위원이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도위원회 위원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11조(시·도위원회의 운영 등) ① 시·도위원회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위원회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시·도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를 “시·도위원회”로, “제15조제5항”을 “제17조제4항”으로, “보건복지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시·도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③ 시·도지사는 시·도위원회의 공정한 운영 및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도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초광역권협의회 구성·운영) ① 시·도지사는 법 제6조제5항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등 필수의료 강화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접 시·도지사와 공동으로 초광역권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

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협의회를 구성한 경우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의 필수의료 정책 수립·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시·도지사에게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3조(권한 등의 위임·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고, 위임을 받은 시·도지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센터 또는 해당 위탁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조직·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춘 전문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3.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필수의료 진료협력체계의 구축·운영
4. 법 제27조 각 호의 세입의 수납에 관한 사무
5. 법 제28조 각 호의 세출 관련 예산의 지출·결산·자산관리 등에 관한 사무

6. 그 밖에 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공고해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 및 위탁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운영계획, 사업진행현황, 자금운용계획 및 자금집행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및 그 공고, 위탁 내용 등에 대한 고시, 위탁 업무의 보고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 칙

이 영은 2027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

■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신 설>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4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나.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이하 "부과권자"라 한다)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 5)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다.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법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조사 또는 검사를 기피하거나 거부·방해한 경우	법 제34조제1항	100	200	300

< 의안 소관 부서명 >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	
연 락 처	(044) 202 - 2667